

○ ○ 시·군·구

수신자
(경 유)

제 목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결정 결과 통지서

1.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167조의4에 따라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체납액에 대하여 징수특례가 직권으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.
2. 다만, 이 통지서를 수령한 후에도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99조의10제6항부터 제7항까지의 사유가 있거나, 허위로 사업자등록 또는 취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징수특례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강제징수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.

신청인	성 명 주소(거소)			생년월일		
1.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전·후 체납액 및 납부의무 면제 가산금						
순서	세목	납부번호	특례 적용 전 체납액(①)	특례 적용 후 납부할 체납액 (②)	납부의무 면제 가산금(③=①-②)	
1						
2						
3						
4						
5						
계						
2. 징수특례 적용(분납승인 체납액) 분납금액 및 납부기한						
분납기간	분납 횟수	분납 허용 금액(④=②)	매월 납부할 금액			
			차수	납부기간	분납할 금액	납부계좌

1. 매월 납부할 금액을 차수별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총 5회 또는 연속하여 3회 분납하지 않을 경우 징수특례가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.

2. 징수특례 적용 대상(분납승인 체납액)을 제외한 다른 체납액에는 매월 가산금이 부과되며,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 및 공매 등 강제징수에 따른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끝.

시 장 · 군 수 · 구 청 장 직인
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
협조자

검토자 직위(직급) 서명

결재권자 직위(직급) 서명

시행 처리과명-연도별 일련번호(시행일)

접수 처리과명-연도별 일련번호(접수일)

우 도로명주소

/ 홈페이지 주소

전화번호() 팩스번호()

/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/ 비공개